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28일

비봉면장 의장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진 *주	진 *주 1995-06-08	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비봉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7-21